

2023년 웅양면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3. 02. 06. ~ 02. 09.(4일)
- 감사범위 : 2020. 2월. ~ 감사일 현재
- 감사중점사항
 - 예산, 회계(계약, 물품관리), 농정, 세정, 복지분야 적정 처리 여부
 - 시설공사 집행(관리) 적정성 및 준공 시설물의 사후관리 실태 등

II 감사결과

구분	행정상(건)			재정상(천원)			신분상				
	계	시정	주의	계	환수	추징	계	주의	훈계	경징계	중징계
계	30	12	18	18,614	13,749	4,865	3	2	1	-	-
감사결과 처분요구	22	9	13	18,614	13,749	4,865	3	2	1	-	-
현 지 조치요구	8	3	5	-	-	-	-	-	-	-	-

III 주요 지적사항

1 회계·계약분야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미공개, 물품구매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되,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최소 분기마다 공개(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웅양면에서는 26건, 3,070천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짧게는 11일, 길게는 77일까지 기한을 초과하여 공개(군 홈페이지 게시)한 사실이 있음.

나. 업무추진비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 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 상품권, 특산품 등 총 14건, 4,851천원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공공예금 이자수입 세입 미조치

공공(보통)예금 이자수입(9,710원) 세입 미조치(계좌 보관)

-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예금 계좌의 이자수입이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세외수입(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으로 징수결정하여 세입처리하여야 하나,
- 공공(보통)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9,71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처리 하지 아니하고,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등 회계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 법인카드 집행 부적정

법인카드 연체료(2,820원) 발생 및 법인카드 사용 후 품의 결제 승인

가. 법인카드 이용대금 처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집행품의 금액 범위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이용대금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 청구서를 확인하여 결제예정 금액에 맞게 대금을 결제계좌에 입금하여 대금청구 금액과 법인카드 결제계좌 잔액이 항상 일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 법인카드 이용대금을 결제계좌에 지연 입금하여 총 3건, 2,820원의 연체료가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 이용대금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나. 법인카드 회계처리 절차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품의-원인 행위-지출’ 순으로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음에도,
- 사전 품의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사후 품의 결제 승인을 받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4)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절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물품(관급자재), 1인 견적 수의계약 부당체결

-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 2021년 3월 ~ 4월 '◇◇ ◆◆◆ 세천정비공사'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당초 설계금액(부가세 포함)이 23,714천원으로 추정가격(부가세 제외)이 2천만원을 초과(1억원 이하) 하였음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1인으로부터 견적서만 제출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5) 물품(관급자재)구매 계약서 작성 미흡

계약서 미작성,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이행기간, 기명날인) 누락

-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인 재무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여야 하나,
-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88건의 물품(관급자재)에 대해 수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38건), 계약서 작성 시 이행 기간 미기재(148건), 작성 명의인에 계약담당자(재무관)의 기명날인을 누락(148건)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절하게 작성·체결한 사실이 있음.

6) 경로당 개·보수공사 분리발주 추진 부적정

사업시기·동일 구조물공사, 통합발주 노력 없이 분리발주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3건, 85,082천원의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기 및 공종이 유사하여 통합발주를 하여야 하나 분리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음.

2] 건설공사분야

1)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미이행

100톤 이상 건설폐기물처리, 분리 발주 없이 시공사 직접 시행

-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시행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 '□□마을 마을회관 옆 용배수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하고, 도급액에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시공사)가 시행하도록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원촌마을 노현소하천 교량 정비사업 소하천 점용허가 미이행

소하천 구역 내 인공 구조물 설치공사, 소하천 점용허가 미이행

- 소하천 구역에서 인공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소하천 관리청에 소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여 관련 인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공사하여야 하나,
- '원촌마을 노현소하천 교량 정비사업'의 경우 공사 구간 내 소하천 횡단 BOX의 구조물이 웅양면 ○○○○ ***-*번지 일원의 소하천 구역(노현소하천)에 해당되어, 소하천 관리청의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하여야 하는데도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

3)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웅양면 ●●●● 보수공사' 등 1,326건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시행

-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사업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최종 하자검사조서와 함께 결과를 제출받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처리가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 '웅양면 ●●●● 보수공사' 등 1,326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준공정산 부적정

목적 외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768천원 과다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정산을 할 때에는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실적 서류를 검토·확인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를 하여야 하고 간접공사비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나,
- '□□□□농로 정비공사' 등 2건에 대하여 건설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실적을 도급자가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정산(감액조정 등)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비 768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5)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소홀, 공사비 12,942천원 과다 지급

-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20건에 대하여 설계내역서에 따른 현장 소운반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12,942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3] 세무분야

1) 신축 등 과세물건 취득세 과세누락

미신고·납부 신축 등 과세물건 취득세, 3,314,190원 과세 누락

-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신축 등 취득한 물건들에 대해 신고 되지 아니한 물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지 않아 취득세 3,314,190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2) 농업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적정

자격이 없는 자(법인, 개인)에게 재산세 1,460천원 부적정 감면(과세누락)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농업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감사일 현재까지 과세대장을 정비(누락)하지 아니하여 자격이 없는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과 개인(◆◆◆)에게 재산세 1,460천원을 부적합하게 감면한 사실이 있음.

3)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시후관리 부적정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 경작 2년 미만 농지 매각 경감 취득세 미추징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나,

- ☆☆☆(웅양면 ○○○○ ***) 등 2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를 경감 받고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지를 매도하였음에도, 경감된 취득세 91,950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4] 복지분야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급여관리 가능여부 등 미확인, 대상자 관련 정보 행복e음시스템 미등록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를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하여 급여 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고, 행복e음시스템에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 가능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급여 관리 지정 대상자(1명)에 대한 관련 정보를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소홀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 모니터링 미이행 및 상담결과 미보고

-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대상 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종결 후 9개월 내 2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웅양면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종결자인 △△△ 등 16가구에 대하여 통합 사례관리가 종결되었음에도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담결과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아니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 정산검사 소홀

▲▲경로당 등 2개소,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경로당 등 2개소의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정산 검사하면서 정산 검사조서(2021년 상·하반기, 2022년 상반기)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내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있음.

5) 농림분야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부합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서 부적정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인 읍·면장은 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신청인의 자격증명발급요건 부합여부를 확인·심사하여 요건에 부합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법 제8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일, 법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발급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 웅양면 ▲▲▲▲ ***-*번지의 농지 일부가 주택 진입로(일부 조경목적의 조경수 식재)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부적절하게 발급하여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처분대상 농지 대상 보고(1차 / 휴경 → 2차 / 자경)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규대상자 등록 및 조사 소홀

신규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검토보고 없이 대상자를 확정, 직불금 지급

- 「농업농촌공익직불법」과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업무담당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규신청자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지급 대상농지 종사여부, 경작여부 등 현장확인(조사) 후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함에도,
- 신규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검토 보고도 없이 대상자를 확정, 직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6] 기타분야

1) 비밀관리기록부 작성 소홀

‘★★★★★★’ 등 비밀사본 파기 시 비밀보관책임자 확인·날인 누락

-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비밀사본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 관리기록부에 파기자, 파기확인자를 명시하고 파기확인란에 비밀보관 책임자가 확인·날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 ★★★★★★ ★★’ 등 14개의 비밀사본 파기 시 비밀 보관책임관의 날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2)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확인 소홀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세대주·세대원, 이장, 관계 공무원의 서명·날인 누락

- 「주민등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할 이장에게 사후확인서를 보내고 이장은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관계 공무원은 사후 확인서용 자료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함에도,

-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 시 사후확인용 자료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 이장, 관계 공무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30건)한 사실이 있음.

3)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 소홀

위임장, 접수인, 발급번호, 신분증 등 인감증명 대리발급 확인·누락

- 「인감증명법」, 「인감증명사무편람」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받은 위임장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을 처리(접수)하면서, 위임장(1건), 접수인(4건), 발급번호(4건), 대리인 신분증(1건),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작성(1건) 등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